

【2026-1학기 수강과목 철회신청 안내】

- **관련근거:** 「학사내규」 제58조(수강신청 철회)

제58조(수강신청 철회) ② 수강신청을 하여 이수 중인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수강신청내역서에 철회교과목을 기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**수강과목 철회 기간:** 2026. 3. 10.(화) ~ 3. 20.(금) 18:00

- **제출방법:** 「수강과목 철회 신청서」 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

※ 수강철회 담당교수 사인 必

- **유의사항:** 재학생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최소학점이 있으니 유의하여 수강과목 철회 신청 해야함

○ **장학금 신청자격**

- 1학기~6학기: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
(단, 성적경고(예비성적경고)자, 해외교환학생파견자는 12학점 미만)
- 7학기: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
※ 이수학점, 성적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GGU콘서트 70%이상 참여해야함

- **문의:** 교학팀(041-731-3214)

2026. 3. 10.

교 학 지 원 처